

제205회 거창군의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2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4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
2014 ~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87
----------	-----------

제출일자	2014. 10. 01.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실장

1. 제정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연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 성실 이행
-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 조달
-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다.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

라.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9조)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 관련기관,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등 위촉위원과 군 소속 공무원 중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관련 담당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마. 사례관리팀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관내 아동·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

바.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1천만원 예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9. 15. ~ 10. 0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성희롱, 실종,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는 지역의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 나. 아동·여성 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2. 위기 또는 피해 아동·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긴급개입구조
 - 나.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3.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 4. 제2호 및 제3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아동·여성 안전방안 연구
 - 나.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 다.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8조(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안전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
6. 제4조에 따른 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관련 담당 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제2호·제5호를 포함하여 5개 유형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학계전문가
10.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정부기관이나 경상남도 등에서의 지시·협조 등의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관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해당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아동·여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사례관리팀은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한다.

제16조(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업무) ① 지역연대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자 중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위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사례관리팀은 관내 아동·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된 것으로 본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7조(사업비의 지원)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동 순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7호, 2014.1.21.,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8호, 2014.1.2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92
----------	-----------

제출일자	2014. 9. 29.
제 출 자	녹색환경과장

1. 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원칙을 정함(안 제4조)

나. 평가대상 및 방법, 횟수를 정함(안 제5조)

○ 대상 :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등

○ 방법 / 횟수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연 1회 이상

다.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평가 실시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

○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 대행 가능

마. 현장평가단 구성(안 제9조)

○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5명 이상 구성

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안 제11조·제12조)

○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 이행이 부진한 경우 보완조치 및 필요한 조치 가능

사. 세부기준(안 제14조)

○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13. 9)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6백만원 예산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8. 28. ~ 9.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가”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방법 등)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서, 그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을 포함한다.

②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모두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평가

2. 제10조의 현장평가단에 의한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직접 평가인 현장평가
3. 각종 실적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서류평가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마친 후 20일 이내 평가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평가할 때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

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5명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모범사례 전파)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기준)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7조제1항 평가 대행

제9조 현장평가단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첨부 사유 대상임.

4. 작성자

녹색환경과장 김 삼 수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활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82호, 2014.1.14., 일부개정]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별표 4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2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환경부 자원순환국 2013.9.]

1. 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

- 본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 이 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준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대행실적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입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한 승계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평가기준 주요 내용

○ 평가 방향

- 평가내용은 바른 수거 정착(바른 수거), 수거과정의 시민편의 배려(시민 배려),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족도 제고), 우수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서비스 기반 강화)으로 다각화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주민만족도 평가), 지역대표에 의한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직접 평가(평가단 현장평가), 행정 담당자에 의한 서류평가(실적서류 평가)로 다면화.
- 민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쓰레기수거 만족도 평가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충분히 반영
-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을 실적평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도 포함시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에 도모

○ 평가 시기 및 회수

- 주민만족도 평가 : 년 1회 (하반기 중)
- 평가단 현장평가 : 년 1회 (하반기 중)
- 실적 서류 평가 : 년 1회 (하반기 중)

○ 평가 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 배점(총점 100점) : (표 1)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3)	가점 3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바른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대시민 자세(6), 종합만족도 (3)
- 평가단 현장평가(5항목) : 바른 수거(30), 종합만족도(1), 인력관리(1), 장비관리(2), 시설관리(6)
- 실적서류 평가(5항목) : 민원처리(4), 인력관리(9), 장비관리(5), 안전관리(5), 거버넌스 참여(7)

○ 평가결과 적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의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
- 대행실적의 평가결과는 포상금 지급, 기간연장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

(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예시)

등급	평가점수	활용(예)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 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등	사업구역 확대, 기간연장 등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계약기간연장 등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입찰참여 부여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사업구역 축소 등
부 진	6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입찰제한 등

(이하 생략)